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5호 2017. 9. 15.(금)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7-1595호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17-1599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제2017-1601호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고 시】**

제2017-159호 공주정안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23

제2017-16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9

제2017-16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1

제2017-16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43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17-1595호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8조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로 보건복지부(법제처)로부터 통보되어 개정 권고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불금 상환에 관한 사항 일부내용 삭제(안 제7조 제2항)

-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정지한다” 는 내용 삭제로 규제개선

##### 나. 종전의 결손처분 사유를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안 제8조)

-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 “체납자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다. 기타 일부조항을 어법에 맞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함

###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5일(10.9.까지 휴일로 10.10.까지 가능)까지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2) 팩스 : 041-840-2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과(전화 : 041-840-89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공주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생활보장업무담당 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의 상환 등)”을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금은”을 “대지급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으로, “6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를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독촉에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건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u>	<u>설치 운영 조례</u>	<u>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u>	<u>설치 운영 조례</u>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	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	-----	
따른 <u>기금출납명령관</u> 은 사회과		-- <u>기금담당관</u> -----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  
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  
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  
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  
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  
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  
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  
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  
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  
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

----- 생활보장  
업무 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  
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기금담당관-----.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  
-----  
-----  
-----  
----- 대지급금----- 대  
지급금 -----  
-----  
-----

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 3. (생략)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대지급금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  
---- 6개월이내-----  
-----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독촉에도 대지급금-----  
-----  
-----.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채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채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온누리시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
  - 온누리공주시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운영기준 등 제도 정비(그 동안 온누리시민에게 알밤 점수로 부여하던 혜택을 마일리지로 제공)
  - 사적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일리지 사용으로 전환
- 온누리공주 가맹점 선정 및 운영의 현실화
  - 온누리공주 가맹점 선정 및 운영 체계 정비와 지원의 현실화

### 2. 주요내용

- 마일리지 제공(안 제6조의2, 3)
  - 회원가입, 활동, 구매 등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 및 사용 기준 등 제도 정비
- 가맹점 운영(안 제6조의4)
  -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 가맹점 지정서 제작, 은누리공주 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방안 마련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미디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미디어담당관실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8103 / FAX: 041-840-2335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제6조의2의 제목 “(마일리지 부여)”를 “(마일리지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의2제4항 중 “가입 시 100점을 부여한다”를 “가입시 5,000점을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옥마을 및 영농재 이용과 고맛나루장터에서의”를 “고맛나루장터에서”로, “알밤점수로 환산하여 숙박, 구입 등”을 “구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알밤점수를”을 “마일리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알밤점수는”을 “마일리지는”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온누리공주시민과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생을 위한 사업 등

③ 제2항의 제2호에 따른 보상은 별표2와 같이 가맹점 마일리지로 운영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알밤점수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알밤점수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1]

## 온누리공주시민증(제4조제2항 관련)



[온누리공주 - PC]



【온누리공주 - 모바일】

[별표 2]

## 마일리지 운영 기준(제6조의2, 제7조)

### 가. 시민 마일리지

구분	활동명	제공점수	제한기준	비고
적립	시민가입	5,000	최초 1회	탈퇴 후 재가입시 미적립
	게시하기	200	1일 3회	글 200자 이상 또는 사진1매, 글 100자 이상 적립
	댓글달기	1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공유하기	2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좋아요	10	1일 5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사용	가맹점 사용		입장권 구매 (전액 가능)	사적지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
			20% 이내	일반 가맹점
소멸	2년간 미사용			

### 나. 가맹점 마일리지

구분	활동명	제공점수	제한기준	비고
적립	가맹점 가입	100,000	매월 1회	- 가입 월로부터 12개월 - 익월 1일 소멸

※ 가맹점에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이 가맹점 상품 구매시 할인 금액만큼 차감되며,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한다.

※ 온누리공주시민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의 50%를 지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온누리시민주소”라 함은 온누리 공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주시 행정구역 중에서 연고 지역 또는 상생발전을 위해서 선택 하는 마을의 리·통 단위를 말하며 가입 당시 온누리홈페이지에 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u></p> <p>5. ~ 7. (생략)</p> <p>제6조(혜택) ①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u></p> <p>3. <u>온누리공주시민가맹점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 제공</u></p> <p>4.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의2(<u>마일리지 부여</u>) ① (생략)</p> <p>② <u>마일리지는 가입·활동·구매 마일리지 등 3종으로 하며 알밤점</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혜택)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u>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u></p> <p>4.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u>마일리지 제공</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 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u></p>

수로 관리한다.

③ 알밤점수는 교환할 경우 1점당 10원으로 계산한다.

④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100점을 부여한다.

⑤ (생략)

⑥ 구매마일리지는 한옥마을 및 영농재 이용과 고맛나루장터에서의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알밤점수로 환산하여 숙박, 구입 등 종료 시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 알밤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알밤점수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삭제

④ ~ ⑥ (생략)

<신설>

별표 2와 같다.

③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 가입시 5,000점을 제공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 ----- 고맛나루장터에서 -----  
-----  
----- 구입 -----  
-----  
-----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일리지를 -----  
-----, ----- 마일리지는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온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제작 및 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온누리공주시민과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생을 위한 사업 등

③ 제2항의 제2호에 따른 보상은 별표2와 같이 가맹점 마일리지로 운영한다.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부모 및 자녀)  
⇒ 18세미만 인구현황 15,558명(남8,064, 여7,494)
  - 장난감과 도서이용 및 대여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연계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재능기부, 물품 등 교환
  -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가족 품앗이 활동 지원  
⇒ 등하교동행품앗이, 학습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홈스쿨 품앗이, 요리품앗이,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역량강화) 교육

## 2. 주요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의 정의 (안 제2조)
-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수립·시행 (안 제3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해지)·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 041-840-8163 / FAX: 041-840-2310

##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
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고시 제2017-159호

## 공주정안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안1농공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09월 15일

공 주 시 장

### ※ 정안1농공단지 지정 (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 1 농공단지 (변경 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03번지 일원

나. 면 적 : 151,956m<sup>2</sup>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농공단지의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코자 유치업종 변경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사업 시행사 : 공주시장

##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 계획기준년도 : 2010년 2월
- 계획목표년도 : 2011년 6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6. 주요 유치업종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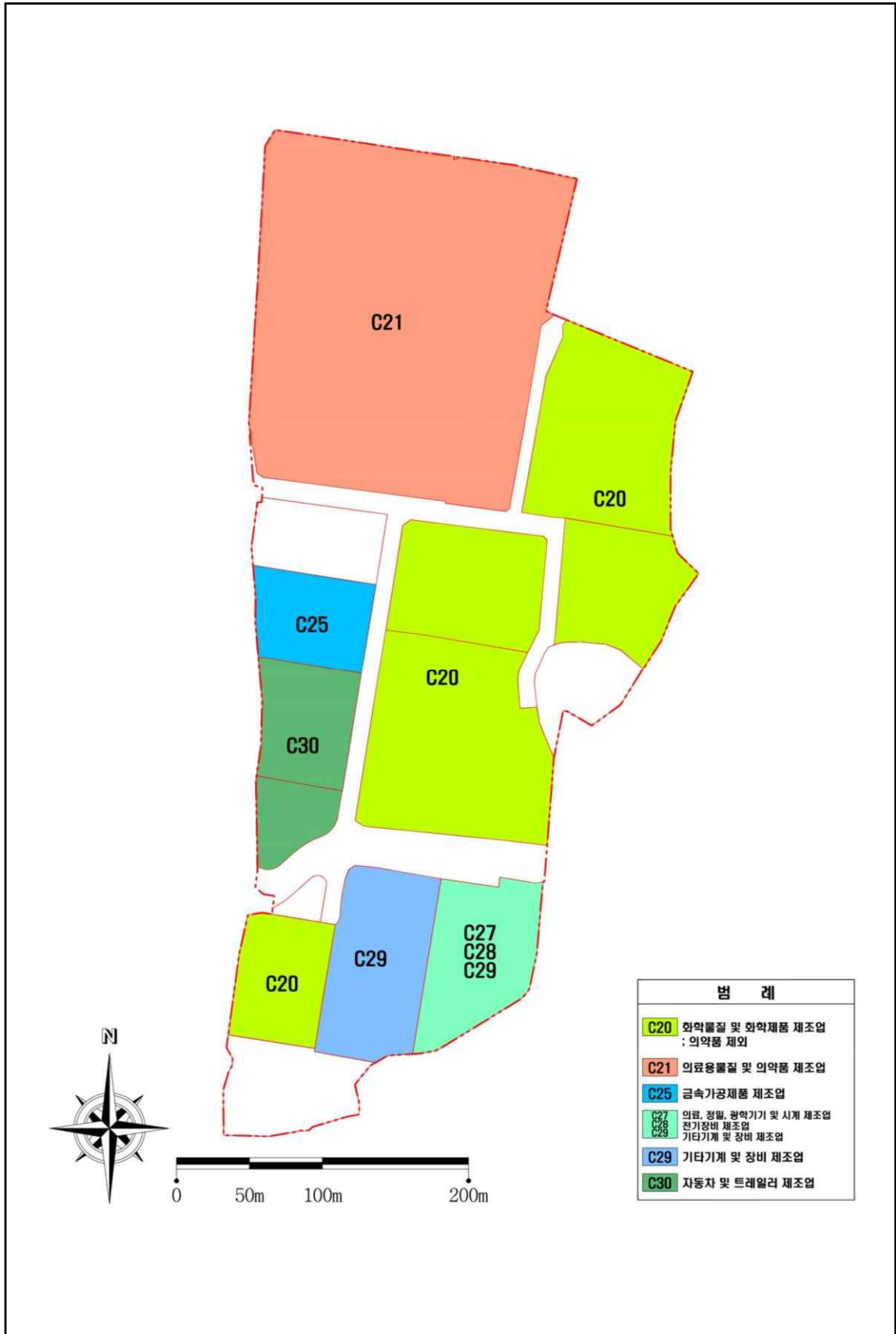
기정(7개 업종)	변경(8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li> <li>○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li> <li>○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li> <li>○ C28 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li>○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li> <li>○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li> <li>○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li> <li>○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li> <li>○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li> <li>○ C28 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li>○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ul>

※유치업종 중분류 CODE :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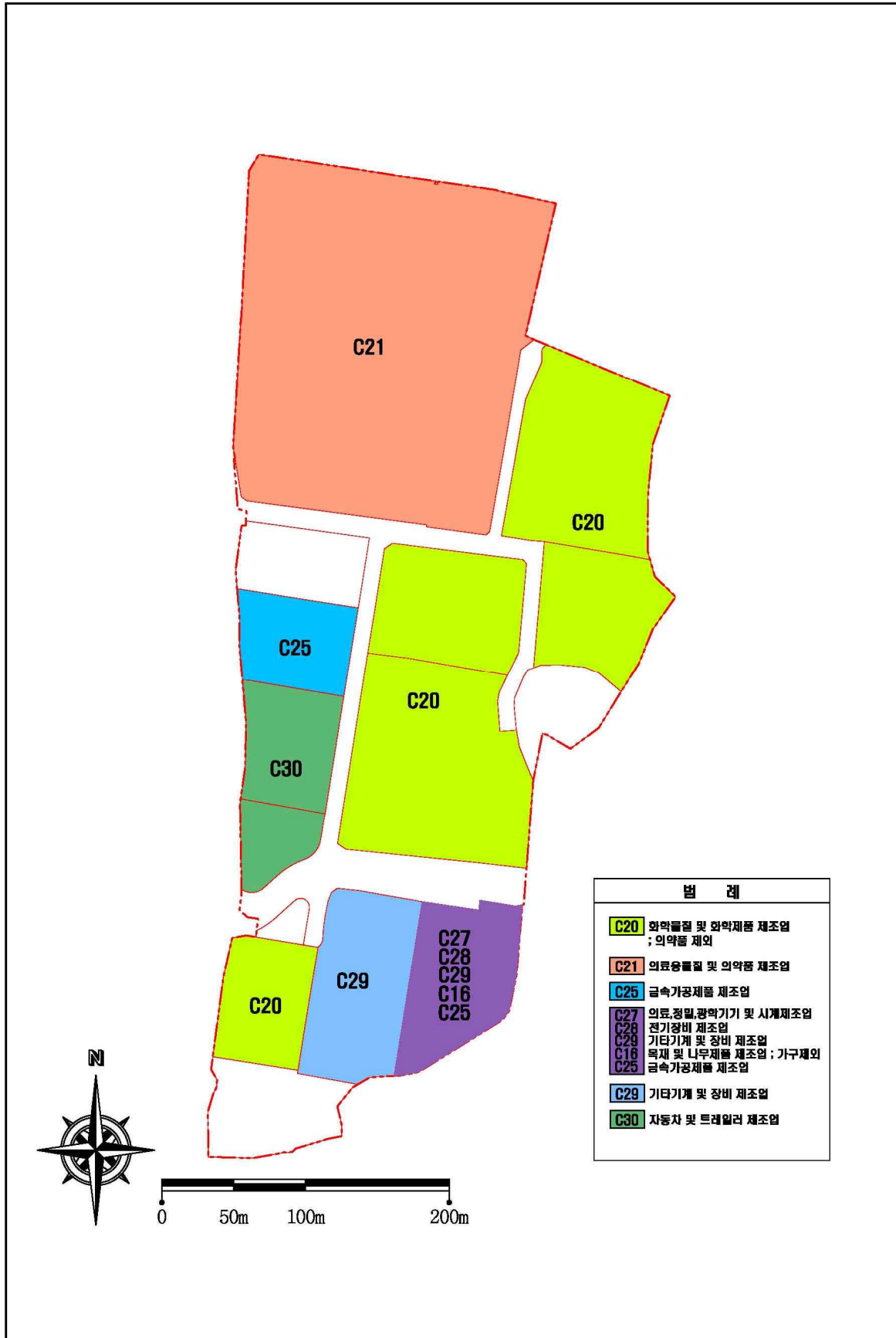
### 가.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개 업종			100.00		
변경	8개 업종					
기정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6,893	-	46,893	38.87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35,979	-	35,979	29.06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6,848	-	6,848	5.53	
기정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4,895	-	4,895	3.95	
기정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8,636	-	8,636	6.97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5,303	-	5,303	4.28	
기정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20	-	2,620	2.12	
기정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50	-	5,250	4.24	
기정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92	감)7,392	-		
변경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증)7,392	7,392	5.97	업종 추가

< 업종배치계획도-기정 >



< 업종배치계획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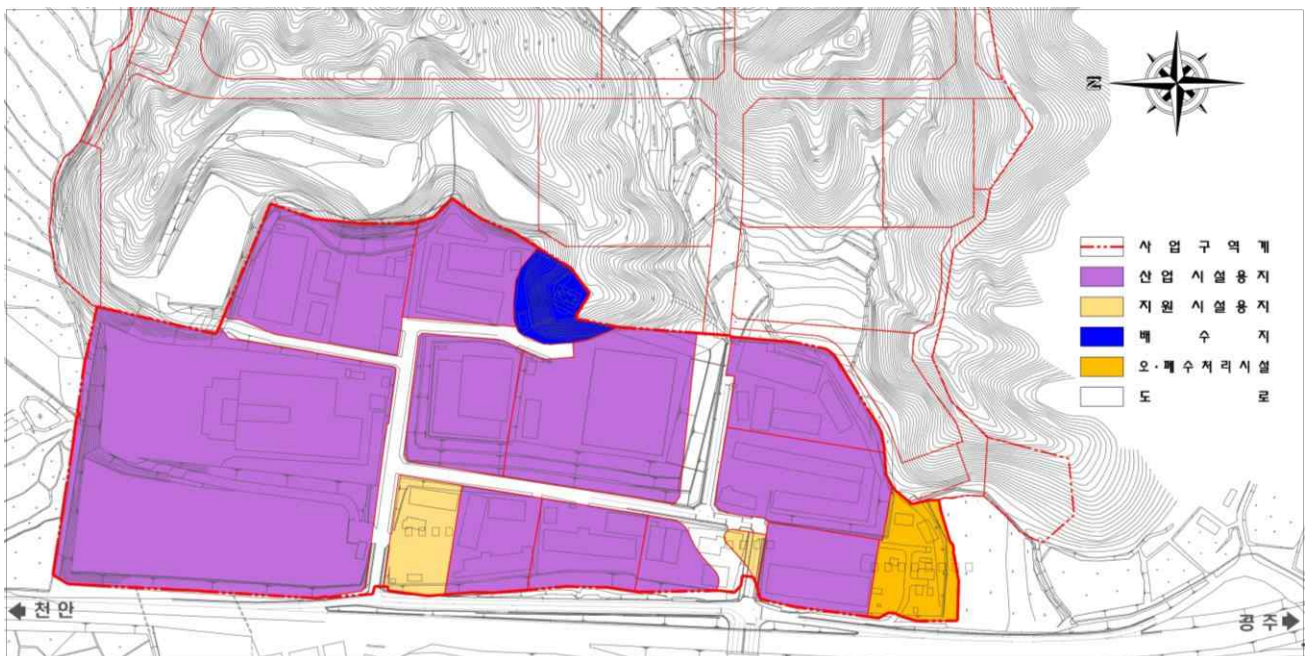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51,956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23,816	81.5	
지 원 시 설 용 지	4,971	3.3	
배 수 지	3,389	2.2	
오 · 폐 수 처 리 장	5,343	3.5	
도 로	14,437	9.5	

< 토지이용계획표 >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1) 교통시설계획 (변경 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	887 (18)	14,940 (503)	2	285 (18)	7,447 (503)	2	350	4,469	2	252	3,024
중로	4	682 (18)	12,180 (503)	1	221 (18)	6,065 (503)	1	209	3,091	2	252	3,024
소로	2	205	2,760	1	64	1,382	1	141	1,378	-	-	-

주) ( )는 단지의 연장 및 면적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	21	집산도로	221 (203)	310-14도	32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09	308-6도	소로1-1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10	중로1-A	중로2-1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2	중로1-A	321-15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64	중로2-1	320-6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414	중로2-1	298-11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주) ( )는 단지의 연장 및 면적

2)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변경 없음)

□ 수도공급시설

○ 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⑤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304-10번지 일원	3,389		

3)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④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322-12번지 일원	5,343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구분	용수량(m <sup>3</sup> /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066.9	1,047.9	감) 19.0	
공업용수	1,027.2	1,009.4	감) 17.8	
생활용수	39.7	38.5	감) 1.2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분	오수량(m <sup>3</sup> /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236.2	219.7	감) 16.5	
공업폐수	198.7	183.3	감) 15.4	
생활오수	37.5	36.4	감) 1.1	

다. 전력공급계획

구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49,609.3	49,552.7	감) 56.6	
산업시설	48,049.6	47,993.0	감) 56.6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559.7	1,559.7	-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425	412	감) 14	
산 업 시 설	377	365	감) 13	
공 중 전 화	48	47	감) 1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02,418.5	203,872.6	증) 1,454.1	
산 업 시 설	202,418.5	203,872.6	증) 1,454.1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가. 토지조서 총괄표

구분	합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면적(m <sup>2</sup> )	비율(%)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기정	48	151,956	100.0	16	128,012	-	-	32	23,944	
변경										50
기정	20	140,858	92.7	12	127,845	-	-	8	16,919	
변경										22
기정	도	26	10,931	7.2	2	400	-	-	24	10,531
기정	구	2	167	0.1	2	167	-	-	-	-

나. 세부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사현리	298-10	장	12,086	12,086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2	사현리	298-11	도	857	857	공	공주시	
3	사현리	298-2	장	46,893	46,89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3층(여의도동,서울국제금융센터 투 아이에프씨동)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12, -13 분할
3	사현리	298-2	장	46,502	46,5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13층(여의도동,서울국제금융센터 투 아이에프씨동)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4	사현리	298-12	장	256	256			
5	사현리	298-13	장	135	135			
6	사현리	298-9	도	110	110	공	공주시	
7	사현리	302-1	도	325	325	공	공주시	
8	사현리	302-3	도	256	256	공	공주시	
9	사현리	303	장	6,848	6,84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74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10	사현리	303-1	도	267	267	공	공주시	
11	사현리	304-10	장	3,026	3,026	공	공주시	
12	사현리	304-11	도	710	710	공	공주시	
13	사현리	304-14	도	1,816	1,816	공	공주시	
14	사현리	304-18	장	15,832	15,832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15	사현리	304-20	장	2,647	2,647	공	공주시	
16	사현리	304-4	도	6	6	공	공주시	
17	사현리	304-6	도	915	915	공	공주시	
18	사현리	305-1	도	568	568	공	공주시	
19	사현리	305-2	장	8,061	8,061	서울 금천구 가산동 692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20	사현리	308-12	장	1,095	1,095	공	공주시	
21	사현리	308-6	도	346	346	공	공주시	
22	사현리	308-7	장	3,186	3,186	공	공주시	
23	사현리	309-2	도	32	32	공	공주시	
24	사현리	309-4	장	4,895	4,895	서울특별시 구로구 운수동 72-1	주식회사 신성강건	
25	사현리	310-1	도	47	47	공	공주시	
26	사현리	310-11	도	75	75	충남 공주시 변영1로 194-7, 113동803호(신관동,대아아이투빌)	김인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7	사현리	310-16	도	48	48	공	공주시	
28	사현리	310-12	장	5,303	5,30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28	주식회사 홍창케미칼	
29	사현리	310-4	도	614	614	공	공주시	
30	사현리	310-7	도	722	722	공	공주시	
31	사현리	310-8	장	5,250	5,25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41	주식회사 뉴올	
32	사현리	311-5	도	185	185	공	공주시	
33	사현리	312-3	장	2,620	2,6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10-8	주식회사 뉴올	
34	사현리	312-5	장	1,259	1,259	공	공주시	
35	사현리	312-6	장	290	290	충남 공주시 변영1로 194-7, 113동803호(신관동, 대아아이투빌)	김인배	
36	사현리	320-4	장	7,225	7,2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 101동1101호(관평동, 대덕테크노 밸리1단지아파트)	김미정	
37	사현리	320-5	장	363	363	공	공주시	
38	사현리	320-6	도	53	53	공	공주시	
39	사현리	320-9	도	47	47	공	공주시	
40	사현리	321-13	도	91	91	공	공주시	
41	사현리	321-15	도	13	13	공	공주시	
42	사현리	321-4	도	848	848	공	공주시	
43	사현리	321-7	도	484	484	공	공주시	
44	사현리	321-17	도	1,171	1,171	공	공주시	
45	사현리	321-18	도	325	325	충남 공주시 변영1로 194-7, 113동803호(신관동, 대아아이투빌)	김인배	
46	사현리	321-9	장	8,636	8,63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109-2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47	사현리	322-12	장	3,429	3,429	공	공주시	
48	사현리	322-15	장	1,914	1,914	공	공주시	
49	사현리	491-2	구	94	9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 101동1101호(관평동, 대덕테크노 밸리1단지아파트)	김미정	
50	사현리	491-3	구	73	7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 101동1101호(관평동, 대덕테크노 밸리1단지아파트)	김미정	
당초(48필지)	합 계			155,905	151,956			
변경(50필지)				151,956	151,956			

※ 정안1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 : 공주정안1농공단지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법인 명칭 : 공주시
- 법인 대표 : 공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03번지 일원
- 면 적 : 151,956㎡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계획기준년도 : 2010년 2월
- 계획목표년도 : 2011년 6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151,956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151,956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㉑	공주 정안1농공단지	산업	정안면 사현리 304-18번지 일원	-	151,95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변경 없음)

도로 결정조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	887 (18)	14,940 (503)	2	285 (18)	7,447 (503)	2	350	4,469	2	252	3,024
중로	4	682 (18)	12,180 (503)	1	221 (18)	6,065 (503)	1	209	3,091	2	252	3,024
소로	2	205	2,760	1	64	1,382	1	141	1,378	-	-	-

주) ( )는 단지의 연장 및 면적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	21	집산도로	221 (203)	310-14도	320-9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09	308-6도	소로1-1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10	중로1-A	중로2-1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2	중로1-A	321-15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64	중로2-1	320-6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414	중로2-1	298-11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주) ( )는 단지의 연장 및 면적

2)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수도공급시설

○ 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4-⑤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304-10번지 일원	3,389	

3)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3-④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322-12번지 일원	5,343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없음)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변경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정안면 사현리 304-18번지 일원	151,95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산업시설용지 (변경 없음)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 ~ 4		-	123,816	
산업 시설 용지	1	①	사현리 298-2번지	46,893	
	2	①	사현리 309-4번지	4,895	
		②	사현리 310-8번지	5,250	
		③	사현리 312-3번지	2,620	
	3	①	사현리 310-12번지	5,303	
		②	사현리 321-9번지	8,636	
		③	사현리 320-4번지	7,392	
	4	①	사현리 305-2번지	8,061	
		②	사현리 304-18번지	15,832	
		③	사현리 303번지	6,848	
		④	사현리 298-10번지	12,086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3			-	4,971	
지원시설용지	2	기정	④	사현리 308-7번지 일원	4,281	
	3	기정	⑤	사현리 312-3번지 일원	690	

배수지 (변경 없음)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배수지	4	⑤	사현리 304-10번지 일원	3,389	

오·폐수처리장 (변경 없음)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오·폐수처리장	3	⑤	사현리 322-12번지 일원	5,343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① 2-① 2-② 2-③ 3-① 3-② 3-③ 4-① 4-② 4-③ 4-④	정안면 사현리 304-1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25m) 이하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1항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적용

지원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2-④ 3-⑤	정안1 농공단지	용도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1항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적용

배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⑤	정안면 사현리 304-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배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오·폐수처리장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3-④	정안면 사현리 322-12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오·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7. 행위의 제한

- 정안1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1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13.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2길 18 (중동) 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직장부 주소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49-6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2길 48 (충동)	2017.09.13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성동 83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3길 14-17 (신성동)	2017.09.13	누락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웰미동 462-2	충청남도 공주시 웰미농공단지길 12-10 (웰미동)	2017.09.13	신축	20131023	웰미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5-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남방길 22-4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민천리 468-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외곽로 391-23	2017.09.13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옥동리 75-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방죽골길 65-8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양리 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신골길 20-20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건동리 22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진구고개길 9-2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246-3, 246-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노루목길 143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55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박쇠실길 16	2017.09.13	신축	20100112	국가 나오는 미번호이며 박쇠새로 보기를 민원서를 제출했다는 지번이름 명칭을 이용하여 박쇠새길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산리 17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2길 46	2017.09.13	신축	20100112	신소의 아래번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상간 지번이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혼합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07-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내로 232	2017.09.13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07-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내로 236	2017.09.13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97-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65-6	2017.09.13	신축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인근 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25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인구굴미길 12-11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08	2017.09.13	신축	20090710	지역특성 반영(충남 대표 신맥로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웰산리 45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개티길 58-6	2017.09.13	신축	20100112	웰산리에서 친원고 광덕면 개티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하여 개티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19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비람터길 7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이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동리 162-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신로 78-28	2017.09.13	신축	20100112	신동리를 사으로 도로명, 신산리, 천안마을(충남)는 도로명, 무성신로(충남)는 도로명, 비람터(충남)는 도로명으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가교리 198-1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마곡사로 598-24	2017.09.13	신축	20100112	마곡사를 용하는 길이라 하여 마곡사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운암리 300-2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유구마곡사로 1146	2017.09.13	신축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용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백룡리 720-1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용못길 7	2017.09.13	신축	20100112	용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용산 아래에 있는 뜻이 있었다 하여 용못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13.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박쇠실길 14 외 2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증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55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밖쇠실길 14	2017.09.13	건물신축에 의한 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220-1, 219-1, 44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진주고개길 9-4	2017.09.13	건물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22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진주고개길 9-2	2017.09.13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07-21, 707-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232	2017.09.13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07-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236	2017.09.13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6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9, 16-1, 16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3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7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68-1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3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8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7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3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9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6, 168-10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36-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0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4, 18-1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0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1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5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38-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2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22, 18-12, 18-2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0-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3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21, 18-11, 18-12, 18-20, 168-6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4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1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2-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5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7-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2-3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6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2, 17-2, 17-6, 18-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2-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7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7-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2-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8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8, 17-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19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0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6-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1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7-4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46-3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2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4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50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3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68-1, 16-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50-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4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68-1, 16-1, 16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5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5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14-1, 213-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말소	
2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08	2017.09.13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13.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림길 8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